

<기술의 요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해체 공정의 대안으로 고소작업차량의 붐을 활용하는 다기능 케이지는 내부 상하작업대가 지붕 슬레이트 경사각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며, 습윤제(물)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와 해체 슬레이트를 일정량 적재 후 한번에 하역할 수 있는 적재대 및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고리를 구비하여 조종자와 작업자가 다기능케이지에 탑승 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표면위로 접근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범위>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해체 작업대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해체물 적재대 및 작업자 추락방이용 안전고리를 구비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량의 붐으로 지붕재 상단으로 이동하여 다기능케이지 내부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 후 지면으로 일괄 하역하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흥원건설(원용석) ② (주)포스코(최정우)

나. 전화번호 : ① 070-8255-8240 ② 054-220-0114

2. 명칭 : 시공단계 변위제어를 위한 고강도 강연선 이용 프리텐션-포스트텐션 조합 세그먼트 교량기술(PPS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을 조합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I 거더로, 포스트텐션 도입량을 줄여 상향 변위를 감소시키고, 강연선과 정착장치 수량을 줄여 시공 성과 경제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또, 시멘트량의 50%를 고로슬래그로 치환하면서도 조기강도를 확보한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탄소발생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교량 기술이다

<범위>

고로슬래그를 50% 포함한 콘크리트와 2360MPa 고강도 강연선을 적용하고 중앙부 프리텐션 세그먼트와 그외 부위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포스트텐션으로 조립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제4항 신설)

- 1)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
- 2)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법·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질인증기관 중요 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제도 합리화 도모